검사결과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대구은행

2. 조치일 : 2020. 2. 26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 용
기관	▪ 경영유의 2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공금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

은행은 공공금고 업무 수행을 위해 통합금고관리시스템(舊 금고보고서관리시스템)을 구축하여 매일 세입 및 세출 등의 변동금액을 반영한 세입세출일계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나

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자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투자원금 기준으로만 세입세출 일계표를 작성하여 평가손익에 관한 재무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

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적배당 상품의 평가손익 등 재무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일계표 등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이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 및 본점 검사부의 검사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공공금고 업무의 적정 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2) 금융사고 등의 보고 철저

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제41조 및 제4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소속 임직원이나 이외의 자가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은 즉시 감독원장에게 주요 정보사항으로 보고하여야 하는데도

은행은 2017.XX월경 수사기관이 은행 전·현직 임원들을 ▣▣▣▣의 수익증권 투자손실금 보전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임원들의 사적인 손해배상 행위로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*이 있으므로

* 2018.XX.XX. 금융감독원에 정보사항 보고, 2018.XX.XX. 금융사고 보고

앞으로 임직원 교육, 감사조직의 역량강화 및 금융감독원과의 의사소통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및 중요사건 등이 발생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보고 및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